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107
----------	--------

제출년월일 : 2023. 8.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재정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신청, 정산의무 및 제외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라.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 3)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3. 7. 13. ~ 8. 2.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제1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2023. 8.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 비용발생 요인: 마을버스 운송적자
- (2)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1일 1대당 수입이 재정지원기준액보다 낮은 업체의 운송적자에 대해 서울시 기준 한도 내 지원

나. 월 산정액의 85% 부분 시 전액 지원, 15% 부분 자치구 5:5 매칭

다. 1차년도 추계액은 마을버스 요금인상이 없다는 전제로 산정하고, 2차년도 이후 추계액은 요금인상에 따른 서울시 산정액을 기초로, 매2년 마다 재산정하는 기준운송원가의 최근(2022년) 인상률 (11.11%)을 반영해 산정(2024년, 2026년 재산정 예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	-	-	-	-	-	-
	구비 보조금	150,000	189,242	189,242	210,269	210,269	949,020
	소계(b)	150,000	189,242	189,242	210,269	210,269	949,020
□ 총 비용(a-b)		150,000	189,242	189,242	210,269	210,269	949,020

4. 재원조달 방안: 구비 100%

5. 덧붙이는 의견: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마을버스 운영 개선,
요금인상 수준, 서울시 기준운송원가 인상 수준,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김혜지 (☎ 3153-9605)